도하라운드의 주요협상의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에 관한 문제와 그 해결책

교수 박사 김 홍 일

1. 서론

지금 세계무역기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도하라운드에서는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과 그 합리적조정을 위한 문제가 대표적인 협상의제로 되여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 정부, 기업체, 무역전문가들과 환경보호전문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와 그 합리적해결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환경보호사업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309폐지)

오늘 지구환경보호는 개별적인 나라나 민족에 국한된 문제의 성격을 벗어나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래일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심각한 국제적문 제로 제기되고있다.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는 우루파이라운드가 결속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출현한 이후부터 심각한 문제로 표면화되였다. 오늘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대책문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자체가 환경보호를 외면하는 일방적무역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현시기 국제무역분야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에 맞는 상품과 봉사의 국제교역체계와 질서를 세우는것이다.

국제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련관, 의존제약관계를 리론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이 지구환경보호 에 긍정적작용을 하면서 발전할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것이다.

론문에서는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이 문제의 본질적측면과 근원을 새롭게 해명하고 환경보호와 국제무역발전의 요구를 다같이 실현하기 위한 몇가지 해결책들을 제기하려고 한다.

지난 시기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리론적으로 해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서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금까지 론의되고있는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하나는 환경보호론적관점, 다른 하나는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 출 발하고있다. 첫째로, 환경보호론적관점에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련관에 대한 리론적연구와 그에 따르는 해결책들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먼저 환경보호론적관점에서의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에 대한 리론 적연구에서 일련의 성과들이 있었다.

이 연구성과의 본질적내용은 두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그 하나는 국제무역이 지구환 경에 주는 부정적영향을 중시한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제한조치가 유효한 환경보호수단 으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환경보호론적관점에서 제기된 리론적연구의 하나는 국제무역이 지구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준다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도서 《국제무역》에서는 국제무역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국제무역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효과, 규모효과, 기술효과로 분석하고있다. 구조효과는 환경을 파괴할수 있는 무역상품의 수출입구조가 변화될 때 환경에 주는 영향이다. 규모효과는 오염정도와 수출입구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출입규모의 장성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영향이다. 그리고 기술효과는 무역상품의 질이 환경에 주는 영향으로서 단위상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발생하는 환경파괴의 정도가 작아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구조효과와 규모효과는 환경과 반비례관계에 있고 기술효과는 환경보호와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전제로부터 환경과 정비례관계에 있는 기술효과를 크게 하여 구조효과와 규모효과에 따르는 환경파괴증대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3가지 효과에 대한 리론적해설은 량자의 련관을 국제무역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영향에 초점을 두고 경제기술적측면에서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환경보호론적관점에서 제기된 리론적연구의 다른 하나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무역 제한조치가 유효한 환경보호수단으로 된다는것이다.

그 론거로 든 환경규제조치들은 일명 록색무역장벽이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에는 환경 허가제도, 록색보조금제도, 환경상품표준기술, 환경보호표식제도, 록색검역검사제도, 환경 무역제재 등 각종 명칭의 무역제한조치들이 포함된다.

환경허가제도는 수출국이 수입국으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전동의통지를 받아야 만 수출을 할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서 만일 수출입상품이 국제적으로 공 인된 표준과 매개 나라들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수입국은 압수, 반환, 소각, 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

록색보조금제도는 국내의 기업들에게 환경보호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게 하는 록색장벽이다. 이 보조금은 다른 나라들의 류사한 상품에 대한 가격우위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것으로 하여 무역장벽으로 기능한다.

환경상품표준기술은 수입국이 수입품이 갖추어야 할 환경관련기술표준을 만족시키는 조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록색무역장벽이다.

록색식료품기술표준은 식료품의 생산과 가공공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이다.

환경보호표식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겉포장면에 붙인 일종의 도형을 말한다. 환경보 호표식의 목적은 국제무역에서 소비자가 그 상품 및 봉사가 연구개발로부터 생산, 리용,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모두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고 생태체계와 인류에게 해롭지 않거나 또는 손해가 극히 작다는것을 알게 하는데 있다.

록색검사검역조치에는 수입품에 대하여 농약의 비유효성분, 방사성물질, 중금속함유 량 등과 짐함과 선박의 위생안전성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이다.

환경무역제재는 비교적 엄격한 록색무역장벽으로서 경한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보복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요구를 지키지 않는데 대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실례들은 매우 많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론적관점에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들이 이룩되였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200여건의 국제환경협정들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20건이 무역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이것들의 기본핵심은 무역제한조치를 리용하여 환경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

무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다국간 환경보호협정들에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국경을 넘는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이 있다.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는 국제사회가 성공적으로 체결한 국제환경협정의 하나이며 그가운데서 무역제한조치가 큰 역할을 하고있다.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기 전에 국제사회는 오존충보호에 관한 베니스공약을 하였는데 그것은 명백한 책임제도가 없고 매 나라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는것이였다. 그리하여 1987년 9월 16일 유엔환경계획의 발기에 의하여 몬트리올에서 오존충보호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오존충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여 오존충파괴물질의 방출을 통제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의정서에 포함된 무역관련내용은 첫째로, 매 체약국은 비체약국으로부터 통제물질과 그것을 함유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하며 둘째로, 매 체약국은 공약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부록문건에 통제물질을 함유한 상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셋째로, 매 체약국은 법을 제정하여 비체약국에 통제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을 수출하는것을 금지하 고 통제물질생산에 대한 보조금, 대부금, 담보금, 보험금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넷 째로, 만일 비체약국이 체약국회의를 통하여 한도규정액과 규정된 수량을 확정받으면 체 약국으로부터 일부 통제물질을 수입할수 있다는것 등이다.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실효과가스방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정인 교또의정서와 그에 뒤이어 빠리협정이 체결되였다.

1997년 12월 4일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제3차회의가 일본의 교또에서 150여개의 체약국정부대표단과 비정부조직대표 5 000여명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교또의정서에 반영된 무역관련내용들을 보면 첫째로, 발전된 나라들사이에 방출권교역을 할수 있으며(삭감의무를 완성하기 힘든 나라는 의무를 초과완성한 나라로부터 초과액을 사들일수 있다.) 둘째로, 정밀방출량으로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계산(본국의 실지방출량에서 산림이 흡수할수 있는 CO_2 의 수량을 던 값을 정밀방출량으로 계산)하여 삭

감하며 셋째로, 록색화과정에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공동으로 온실효과가스 방출량을 삭감하며 넷째로, 단체방식 즉 유럽동맹국가들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어떤 나라는 삭감하고 어떤 나라는 증가하는 방식으로 총체적으로 삭감의무를 수행한다는것 등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효과가스방출권을 팔고사는 탄소방출권시장이 활성화되고있다. 즉 국가와 국가사이, 개별적인 기업들사이에 온실효과가스방출권을 삭감목표에 근거하여 매매하고있다. 현재 탄소방출권을 팔고 사는 국제시장은 유럽지역에 6개가 있고 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에도 있으며 최근에 중국, 인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탄소방출권거래소를 내오려 하고있다. 탄소방출권의 가격은 감소시킨 온실가스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감소시킨 이산화탄소 t당 가격은 18~25€정도이다.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에 진행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합의되고 2017년 12월에 국제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빠리협정은 교또의정서의 계승으로서거기에 반영한 무역관련합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197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 이 협약은 아프리카코끼리로부터 선인장에 이르기까지 3만종의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거래규정을 제시하였다.
- 이 협약의 무역관련내용들에서 수출허가증발급조건이 대표적인것이다. 그 조건들을 보면 우선 수출국의 과학기관이 해당 수출이 야생동식물의 존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또한 수출국의 관리기관이 동식물표본의 수출이 자국의 야생동물보호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것이다. 그리고 수출국의 관리기관이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출입과 정에 동식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동식물의 생명피해를 줄인다는것을 확인하며 수출자가 해당 동식물표본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이미 받았다는것을 확인하는것 등이다.

이와 같이 이 협약은 무역금지 또는 무역제한 등 무역조치들을 지구상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지구생태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1989년 3월에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최하에 스위스의 바젤에서는 유독성폐기물의 반출과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정(국경을 넘는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 젤협약)이 채택되였다.

이 협약의 무역관련내용에는 우선 수출국이 통과국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하여 지니는 사전통보의무와 통과국과 수입국의 거부권 그리고 일단 수출된 유독성물질이 수입국에서 적절하게 처분되지 않을 때의 수출국의 재수입의무 등이 있다. 또한 수출국은 유독성페기물의 반출이 인간의 생명과 주위환경에 미치는 후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입국에 넘겨주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국은 자기 나라에서 유독성페기물을 처리할수 없는 경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수출국은 반출의 대상으로 되는 유독성물질들과 페기물들을 공인된 국제법적규범에 맞게 포장하고 수송하되 어떤 경우에도 당사국들의 자주권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것 등이 있다.

바젤협정은 유독성폐기물을 통제하기 위한 첫 국제환경협정으로서 유독성폐기물의 국제무역과 비법반출을 통제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있다.

둘째로,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련관에 대한 리론적연

구와 그에 따르는 일련의 해결책들이 제기되였다.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 진행된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에 대한 리론적연구에서 대표적인 주장의 하나는 자유무역이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이다.

로버트 씨 펜스트라와 알란 엠 테일러가 공동으로 집필한 도서 《International Trade》에서는 자유무역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주기도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도서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사탕수수에 대한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탕수수에 대한 수입할당제는 사탕수수소비자들이 세계시장가격보다 2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여 그들에게 손해를 준다. 그리하여 회사들은 사탕수수대신에 자국 농민들로부터 강냉이를 구매하는데 농민들은 정부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다. 사탕수수에 대한 수입할당제와 강냉이생산에 대한 보조금때문에 사탕보다 훨씬 더 많은 강냉이가 에라놀을 생산하는데 리용된다. 결국 강냉이의 생산확대는 보다 많은 토지자원과 화학비료를 요구하며 에네르기도 많이 소비된다. 이것은 사탕수수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적용하는것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것을 보여준다.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에 대한 리론적연구에서 대표 적인 주장의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이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무역의 영향인데 만일 인류의 공동자원에 대한 제한없는 무역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 된다는것이다.

알란 엠 테일러는 대서양의 대구, 지중해의 다랑어, 유럽과 아시아수역의 철갑상어 등은 거의나 멸종위기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공유의 《비극》이라고 하면서 이 현상은 사람들이 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할 때마다 발생하며 물고기와 같은 인류공동의 자원이 그 누구든지 잡을수 있는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때 매 생산자들이 자기의 몫을 늘이기 위하여 시도하기때문에 자원이 빨리 감소하고 공유의 《비극》이 더심화되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의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대책은 주로 세계무역기구내에서 론의되고있으며 성원국들사이에 환경무역을 위한 해결책들을 합의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무역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도하라운드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협상의제로 제기하였으며 일련의 주목되는 긍정적활동을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환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상품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제9차 도하라운드 각료회의때부터 시작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상품 에 대한 정의와 환경상품목록작성을 잘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론 의중에 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아직까지 환경무역과 관련한 협정이 하나도 체결되지 못

하였으며 그 체결을 위한 협상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보다도 국제무역을 통한 개별적나라의 리익을 보다 우선시하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리해관계로부터 환경보호의 요구가 악용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개별적나라들의 국내법과 규정들이 서로 다르고 환경보호를 위한 통일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여 환경무역장벽이 국제무역에 커다란 억제적작용을 하고있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와 그 해결책들과 관련한 선행한 연구와 성과들을 총화해보면 문제와 그 해결의 긴박성에 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립장에서 평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찾기 힘들며 리해관계의 대립과 같은 사회경제적성격의 난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만 한 세계무역기구의 능력과 그 문제해결의 앞날을 락관하기 어렵다는것을 알수 있다.

본론문에서는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관계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규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보는 몇가지 방도들을 제기하려고 한다.

2. 본론

2.1.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의 본질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은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사이의 호상작용, 의존제약관계이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에 대한 리론적연구들에서는 환경보호론적관점과 국제무역론적관점에서 출발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량자의 사이에는 일련의 본질적차이가 있다.

환경보호론적관점에서의 주장은 주로 환경보호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영향을 반대하며 국제무역론적관점은 환경보호를 리유로 한 무역제한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수단 으로 리용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구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그 본질에 대한 옳은 리해를 정립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문제해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이 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채택하는데 도움을 줄수 없다.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국제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제이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의 본질적측면은 무엇보다먼저 국제무역이 지구 환경보호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의 최소화이다.

환경보호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영향은 크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구 분할수 있다.

국제무역이 환경보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는 세계의 각이한 자원들의 교역을 통하여 세계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다는것과 환경보호기술들의 무역거래가 지구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유지보존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론의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원래보다 더 좋은 환경의 창조가 아니라 원래의 환경을 복귀하고 보존유지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는 면이 강조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에서 그본질적측면은 환경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영향을 최대로 줄이거나 근절하는것이라

고 볼수 있다.

환경보호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는것은 중요하게는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이다. 원래 세계무역기구는 지구환경문제를 직접 취급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2009년 12월 단마르크의 쾨뻰하븐에서 열린 기후와 관련한 수뇌자회의를 계기로 국제무역이 지구환경보호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회의의 기본목적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상품의 생산과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협정을 만드는것이였는데 이 회의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 수백명의 항의자들이 구속되였지만 수천명이 더 집결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무질서한 생산과 비법적인 무역행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 일부 사람들은 북극곰과 참대곰의 의상을 하고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동물들의 서식지에 미치는 위협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하였다.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이러한 항의운동은 한마디로 세계무역기구가 환경을 파괴하는 무역행위들을 비호하거나 묵인할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대책을 취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을 발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국가환경관련법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도를 제약하는 규제를 적용하고있는것이 많은 사람들의 항의의 대상으로 되였던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한 나라의 상품이 다른 나라의 부당한 환경기준으로 하여 그 나라시장에서 배척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제네바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이 소송에 관련된 나라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여있다. 바로 각국의 환경관련법들을 제약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이러한 제도가 환경보호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을 격분케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보호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는것이 심각한 사회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사이의 련관을 규제하는 본질적측면이 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의 본질적측면은 다음으로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범위와 수준의 합리화이다.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하는것은 량자의 호 상관계를 규제하는 본질적측면이다.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범위와 수준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국제무역의 발전, 나아가서 매 나라의 경제장성을 저애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규정되는것은 국제사회의 현실적요구이다. 만일 환경보호가 매개 나라의 경제와 인민들의 경제생활에 큰작용을 하는 국제무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환경보호자체의 근본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추구하는것으로 된다. 또한 국제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제한하는 범위와 수준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여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문제도 해결될수 있고 또 그것이 매 나라와 세계전체의 경제발전에 리로운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2.2. 세계무역기구내에서 국제환경상품협정을 위한 협상의 지연과 그 원인

세계무역기구는 환경보호문제를 외면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를 외면한것으로 하여 벌어지는 대중적항의들을 목격한 이후 2014년 7월부터 28개의 유럽동맹성원국들을 대표하는 유럽동맹과 세계무역기구의 다른 16개의 성원국들사이에 처음으로 환경상품협 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오고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상을 통하여 환경상품과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를 바로하며 그에 기초하여 환경상품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매 나라의 환경보호기준에서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환경장벽을 제거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협정을 빨리 체결할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시작점에서 협상참가자들이 제안한 환경상품의 개수는 650개로서 아시아래평양경제협력회의가 제기한 54개와 너무나도 판이하였으며 그나마도 거기에는 환경에 긍정적영향을 준다고 보는 상품은 140개이고 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상품은 무려 120개나 되였다. 그리고 협상은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와 환경상품목록에 대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엇갈린 주장들에 의하여 시작부터 심중한 난관에 부닥쳤으며 아직까지 모든 나라들이 접수하고 그 리행이 담보될만 한 정의와 목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기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있으며 정의자체를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들까지 나오고있다. 즉 환경상품의 정의에 대한 끝이 없는 론쟁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록을 확정하고 환경장벽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다.

현재 환경상품목록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가 제안한 관세적용목적에서 출발한 목록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목록, 세계무역기구가 제기한 153개의 국제통일상품분류표(HS)에 의한 목록, 세계은행이 제기한 43개의 친환경상품목록, 무역과 지속적발전을 위한 국제쎈터가 제기한 친환경상품목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환경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영향을 주는것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고 주로 발전된 나라들의 리해관계를 반 영한 공업품이나 제조품이 절대다수이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농산품은 브라질이 제기한 생물연료, 에타놀을 제외하면 거의나 없다.

한편 어느것이 환경상품인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의 설정방법문제가 론난속에 있다. 제품별평가방법, 사업대상 또는 통합적접근법, 제의와 제공법, 환경비용승인법 그리고 개발상의 리익법 등 여러 나라에서 제기한 방법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들이 계속 고집되여 아직 그 어느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되지 못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협상은 환경무역을 촉진하고 환경장벽을 해소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무역의 부정적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사표명에 그치고 아직까지 구속력이 있고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해결책들을 완성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세계무역기구내에서 구속력있는 환경무역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있는 기본원인 은 한마디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둘러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 전도상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의 대립에 있다. 현시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사용해오던 기존의 수단들을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관세협상의 타결로 더이상 로골적으로 쓸수 없게 되여있다. 세계무역기구 성원국들은 기구의 관세협상에서 결정한대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지 않을 때에는 보복관세를 면할수 없게 되거나 해당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이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제한에 효과가 있고 명분이 뚜렷한 대체수단이 필요하게 되였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겉으로는 국제무역이 지구환경보호에 주는 부정적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독점기업들의 리윤추구에 지장을 주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이 나라들의 수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제한장벽을 쌓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이 나라들이 접수할수 없는 장벽을 쌓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을 막으면서도 이 나라들 에 대한 자기들의 수출품에 대한 환경장벽을 낮출데 대하여 강요하고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내에서 추진하고있는 환경상품협상마당에서도 지구환경보호보다 자기 나라 독점기업체들이 다른 나라들의 환경장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턱대고 환경상품의 목록을 확대하고 지어는 환경보호와는 인연이 없는 상품들까지도 관세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2.3.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도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관계문제가 인류공동의 리익에 맞게 원만히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먼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지구환경파괴의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리익을 걷어 들인 자기들의 책임을 심각히 돌이켜보고 발전도상나라들의 환경상품들에 대한 부당한 제 한장벽들을 제거하며 이 나라들의 환경산업과 무역의 발전에 응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는 2010년 6월경에 381가지였던 보호무역주의정책들이 2016년 10월 중순경에 1 263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정책들이 세계경제와 무역의 장성 을 심히 억제하고있다고 경고하였는데 그 주되는 당사자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다.

실례로 2016년 3월 17일 프랑스국회는 종려기름수입관세를 4배로 높여 세계최대의 종려기름생산 및 수출국들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아르헨띠나가 자국산 생물디젤유에 유럽동맹이 부당하게 반투매수입관세를 적용한데 대하여 제기한 제소를 세계무역기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최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탄소관세를 적용하여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버리려고 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탄소관세는 2008년 6월도이췰란드의 본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대표들이온실효과가스방출감소의무를 지니지 않은 나라들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적용문제가 론의되게 되였다. 그런데 이 탄소관세는 겉으로 보면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요구에부합되는 정당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단계와 수준을 무시하고 온실효과가스방출량감소의무를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보호무역정책의 새로운 표현형태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떠들고있는 탄소관세는 교또의정서와 《빠리협정》의 기본원 칙에 저촉되며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의 현행규정과도 대립된다. 만일 탄소관 세가 환경보호라는 외피를 쓰고 발전도상나라들에 적용된다면 생산력발전수준이 미약한이 나라들의 무역발전을 저애하고 대신에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독점기업체들에 세계무역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촉진시키는 결과만이 초래될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

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관계문제가 인류공동의 리익에 맞게 원만히 해결되자면 우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있는 부당한 무역제 한조치와 발전도상나라들의 무역과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또한 발전된 나라들은 빠리협정에서 매해 1 000억€를 발전도상나라들의 환경산업과 기술발전 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책임적으로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가 바로 해결되자면 다음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전황과 일방적인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의 힘을 부단히 키워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우선 지구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산업을 일떠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환경상품의 개발과 대외실현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무역발전을 다같이 추진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판문제를 잘 해결하면 환경을 보호하는것과 함께 자기 나라의 환경관련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고 환경상품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수 있다. 환경상품의 개발과 수출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고 일반상품과는 달리 관세나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으므로 전망이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또한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론의에 주동적으로 참가하고 국제적합의들을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 적론의가 자기들의 경제발전수준과 전망적발전, 환경상품무역의 전망과 관련한 의도가 국 제무역-환경관련협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보호기구들 과 국제무역관련기구들에서 진행하는 국제무역과 환경보호에 관한 론의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중시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들을 신속히 장악하고 발전된 나라들의 리해관 계만을 우선시하는 국제규범들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환경보호협약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서 론의되는 무역관련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리익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런던해양투기협약, 빠리협정 등에 반영된 무역과 관련한 합의내용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들의 내용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리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력사적조건과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 려한 환경무역기준을 만들어 환경보호와 국제무역발전의 요구가 다같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환경보호기구들과 국제무역관련기구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

경보호의 요구와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의 동시적실현에 필요한 범세계적인 합의를 이룩하는것이 필요하다.

환경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자체를 회피할것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무역이 환경보호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을 리론적으로 재정립하며 환경장벽으로 제한되는 국제무역의 감소를 막기 위한 방향에서 환경상품에 대한 과학적이며 실천적의의가 있는 정의를 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에서 경제기술적측면에 치우칠것이 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수준을 반영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징표들을 엄격히 결합하여 공정한 환경상품거래의 출발적전제를 마련하도록 할수 있다.

환경상품목록을 작성하는데서는 국내총생산액차이방식을 연구도입할수 있다.

이 방식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들이 환경상품목록에 가능한껏 많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비중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GDP와 발전도상나라들의 GDP와의 차이를 평균한 GDP기준을 만들고 이 평균보다 작은 나라들에 환경상품목록에 제기하고 합의할 수출품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목록을 완성하도록 할수 있다. 그 실천적대책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장성속도를 예측한 자료에 기초하여 2050년까지 5년을 단위로 하는 단계를 정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환경농산물과 환경공업품의 비중이 점차 많아지도록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수 있다.

3. 결 론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옳바로 리해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과학적이며 구속력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는것은 오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리론실천적문 제의 하나이다.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를 인류공동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련관문제들에 대한 일면적이며 본위적인 견해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통일을 보장하며 이 문제의 원인을 옳바로 규명하여야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하여 인류공동의 자원인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국제무역을 발전시키며 매 나라들의 경제발전과 무역발전을 억제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국제환경상품협정을 가능한껏 빨리 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야한다.

우리는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무역발전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무역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한 과학적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나라의 대외무역에서 환경보호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제무역질서를 새롭게 수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 환경보호